**고현 성당 ME 협의회 회칙**

# **총 칙**

1. **명 칭**
	1. 본회는 천주교 고현 성당 ME 협의회(고현 성당 ME)라 칭한다.
2. **사무소**
	1. 본회의 사무소는 고현 성당 안에 둔다.
3. **목 적**
	1. 본회는 ME 정신에 따라 하느님 안에서 부부애의 가치관을 생활화하고 ME 운동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4. **사 업**
	1.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		1. 교구 ME 주말에 부부들을 참여시킨다.
		2. 주말을 경험한 부부들과 나눔 모임(SHARING)을 지속한다.
		3. 우리의 미래인 초, 중등부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한다.
		4. 기타 본회의 목적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.

# **회원과 임원**

1. **회 원**
	1. 본회의 회원은 ME 주말을 경험한 부부로 하며,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		1. 정회원: 나눔 모임(SHARING) 활동과 회비 납부를 하는 부부
		2. 명예회원: ME 주말을 경험한 부부
2. **임 원**
	1.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		1. 대표 부부
		2. 총무 부부
		3. 조장 부부
3. **임원의 임무**
	1. 대표 부부: 본회를 대표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	2. 총무 부부: 본 회의 회계 및 재정과 각종행사에 대표를 보좌한다.
	3. 조장 부부: 나눔 모임(SHARING)을 진행하고 관리한다.
4. **임원의 임기**
	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5. **임원의 선출**
	1. 대표 부부: 임원 회의에서 대표 부부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.

 (단, 담당 사제의 의견을 반영 후 총회(임시총회)에 상정한다.)

* 1. 총무 부부는 대표 부부가 임명한다.
	2. 조장 부부는 각조에서 자유롭게 선출한다.

# **회 의**

1. **회의 소집**
	1. 총회는 매년 대림 첫 주를 기준으로 전 후 1개월 이내에 대표 부부가 소집한다.
	2. 임시총회는 대표 부부, 임원회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.
	3. 전체 나눔 모임(SHARING)은 분기별 1회 실시한다.
	4. 교구 ME 주말 참여가 있을 경우에는 환영식겸 나눔 모임(SHARING)을 개최한다.
2. **의결**
	1. 본 회의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		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		2.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
		3. 사업 실적 보고
		4. 임원 선출(2년 주기)
		5. 나눔(SHARING)조 재편성(2년 주기)
		6. 기타 중요 사항
3. **회의 성립과 의결**
	1. 총회 및 임시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인원 대비

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 **재 정**

1. **재정의 조달**
	1.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. 회비는 부부당 \10,000/월으로 한다.
	2. 단, 신규 회원은 나눔 조 편성 후 익월부터 회비 납부한다.
2. **회계연도**
	1. 회계연도는 전년도 총회일로부터 금년도 총회일까 지로 한다.

# **부 칙**

1. **회칙의 발표**
	1. 본 회칙은 2020년 01월 19일 부터 유효하다.
	2. 규정 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